

일본 경찰법개정안 해설

河合 潔 著

(警察廳 總務課長 補佐)

※ 편집반 역(경찰공론 '94년 10월호)

〈目 次〉

I. 머리말

II. 改正의 經過

III. 改正의 趣旨 및 背景

IV. 改正의 概要

I. 머리말

이번 경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4년 법률 제39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경찰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시행령(1994년 시행령 154호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및 경찰청 조직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1994년 규칙 155호 이하 「개정조직령」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1994년 2월 24일에 공포되었다.

이들 법령의 개정은 경찰청의 조직 및 都道府縣 경찰상호간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원고에서는 이하 이들의 법령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문중 의견이 들어간 부분은 사건임을 미리 밝혀둔다.

이하, 「법」이라는 것은 개정법에 의한 개정후의 경찰법(1955년 법률 제162호)을, 「령」

이라는 것은 개정령에 의한 개정후의 경찰법 시행령(1955년 정령 제151호)을 「조직령」이라는 것은 개정조직령에 의한 개정후의 경찰청조직령(1955년 정령 제180호)을, 「구법」이라는 것은 개정전의 경찰법을, 「구령」이라는 것은 개정전의 경찰법 시행령을, 「구조직령」이라는 것은 개정전의 경찰청 조직령을 각각 말하는 것으로 한다(개정법 및 개정령의 신구 대조 조문에 대해서는 《후에 게재하는 것을 참조할 것》).

II. 改正의 經過

3월 17일 개정법안 사무차관등 회의부의

3월 18일 개정법안 각의(閣議) 결정, 閣法 제22호로서 국회 제출

5월 20일 개정법안 중의원 지방행정위원회부의

- 6월 3일 개정법안 중의원 지방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설명, 심사, 전원일치로 가결
- 6월 7일 개정법안 중의원 본회의 가결, 중의원지방행정위원회 부의
- 6월 14일 개정법안 참의원 지방행정위원회 제출이유 설명
- 6월 16일 개정법안 참의원 지방행정위원회 심사, 전원일치로 가결
- 6월 17일 개정법안 참의원 본회의 가결, 성립
- 6월 20일 개정령안, 개정조직령안 사무차관 등 회의 부의
- 6월 21일 개정령안, 개정조직령안 각의(閣議) 결정
- 6월 24일 개정법, 개정령 및 개정조직령 공포, 개정법 및 개정령의 都道府縣 경찰상호간의 관계 등 규정 정비에 관한 부분의 시행
- 7월 1일 개정법, 개정령 및 개정조직령(공포일 시행의 부분을 제외) 시행

의 진전, 최근 범죄정세의 악화, 경찰조직의 고령화, 대량 퇴진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경찰을 둘러싼 극히 복잡다단한 국내외적 치안정세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IV. 改正의 概要

1. 경찰청의 조직개정

- 경찰청 장관관방에 새로이 국제부를 설치함.
 - 경찰청에 새로이 생활안전국을 설치함과 동시에 경찰청 경무국을 폐지함.
 - 경찰청 형사국의 소관사무를 개정하여 동 국 보안부를 폐지함.
 - 경찰청 통신국의 소관사무를 개정하여 동 국을 정보통신국으로 개칭하는 것.
- 위의 4가지 이외에도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다.

가. 장관관방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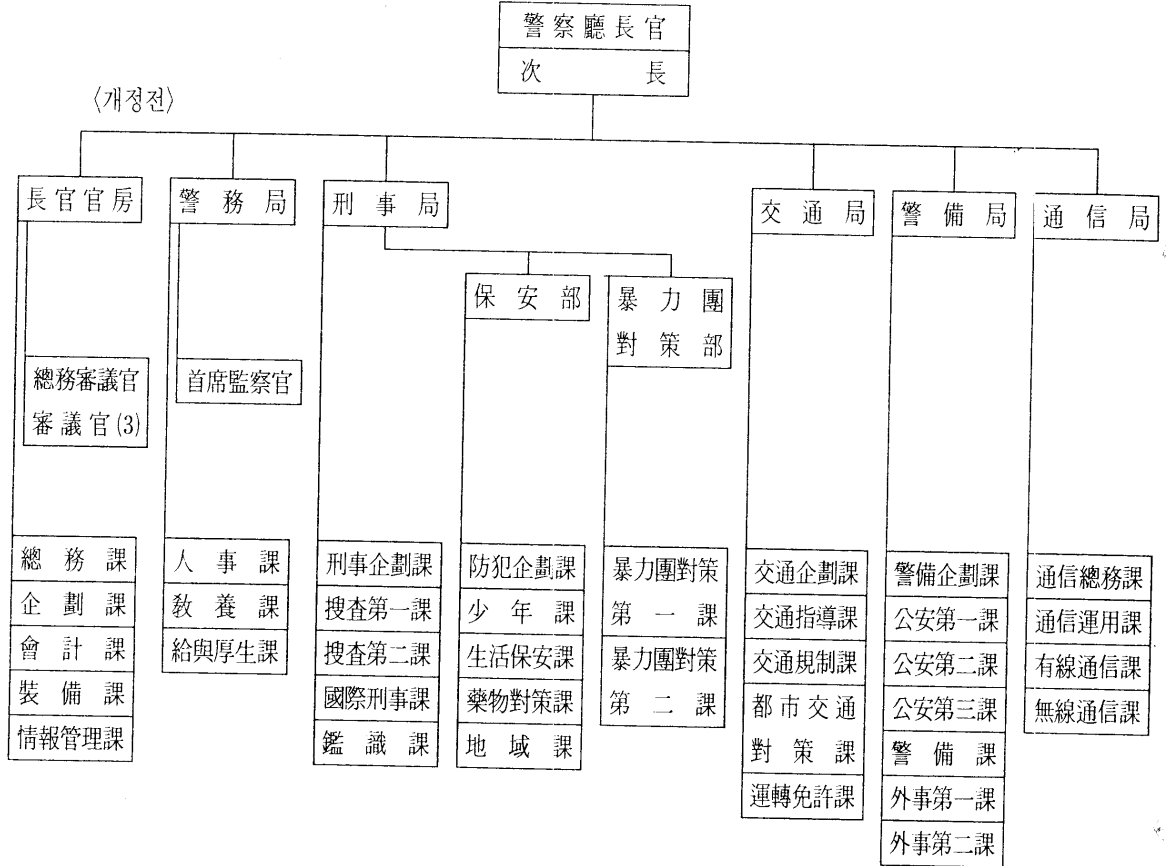
① 사회의 국제화에 대응한 경찰행정을 통일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장관관방에 국제부를 설치함과 동시에(법 제19조 제2항, 제21조) 경찰청 경무국의 폐지와 관련, 동 국의 소관사무를 장관관방에게 이관하기로 하였다(법 제21조 제1항).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총무과의 사무에 해당한다(조직령 제4조). 또 개정조직령에 의하여 기획과를 폐지

III. 改正의 趣旨 및 背景

이번 개정의 취지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경찰운동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청의 조직개정 및 범죄의 광역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都道府縣 경찰상호간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그 배경에는 범죄 등 경찰업무의 광역화, 국제화를 비롯한 보더리스(Borderless)화

〈平成6年度警察廳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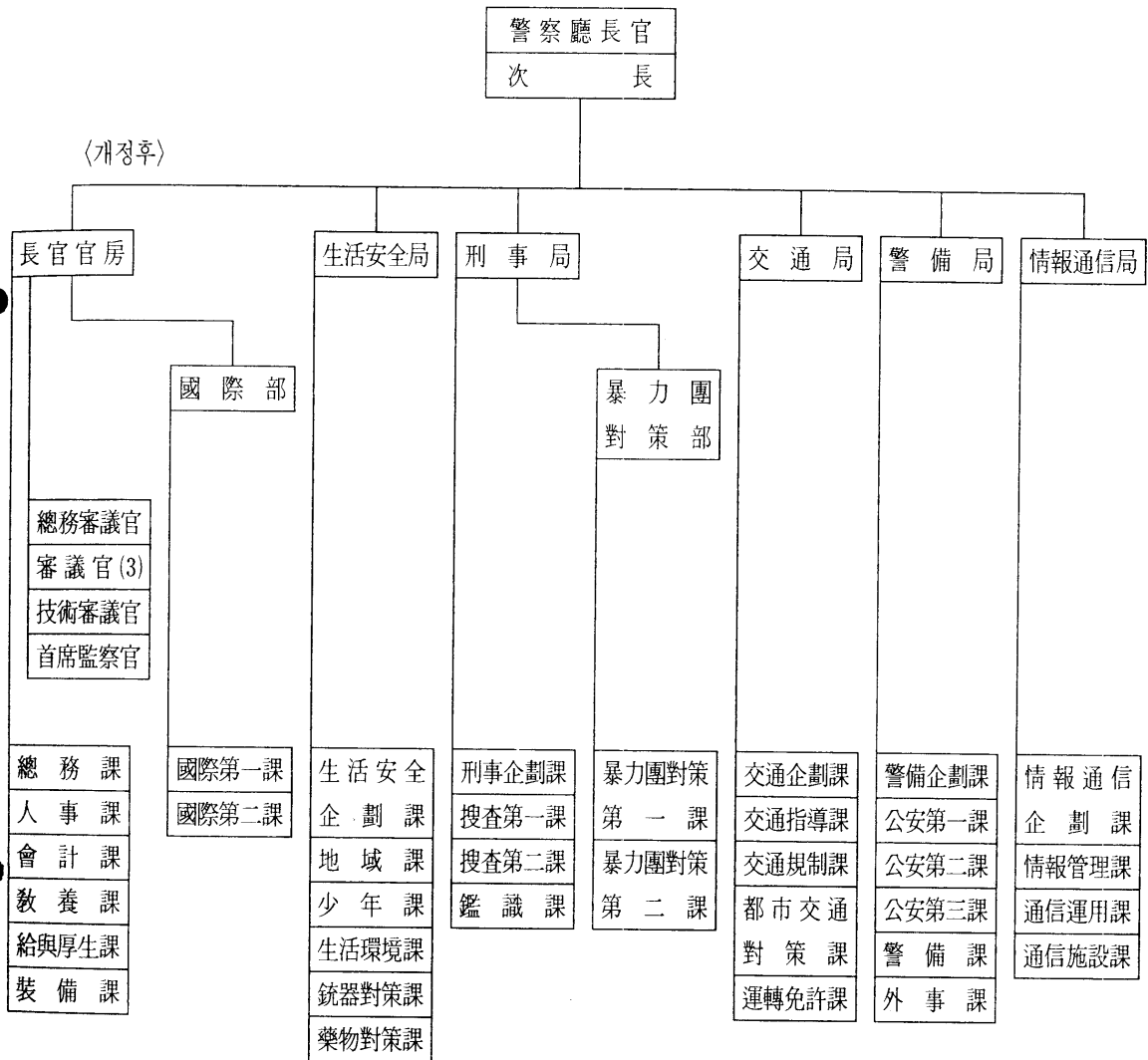
하는 대신 동 과의 사무(구조직령 제4조의 2)는 총무과로 이관하게 되었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는 인사과의 사무에 해당한다(조직령 제4조의 2, 구조직령 제6조)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2호는 교양과의 사무에 해당한다(조직령 제4조의 4, 구조직령 제7조). 또한 조직령 제4조의 4 제1호의 「직장 또는 경찰교양시설 등에 있어서의 경찰

실무, 술과(術科), 그 이외의 사항에 관계되는 경찰직원의 교양에 관한 사무일반」은 구조직령 제7조 제1호의 「경찰교양일반」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5호까지는 급여후생과의 사무에 해당한다(조직령 제4조의 5, 구조직령 제8조). 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경찰관의 직무에 협력 원조한 자의 재해급부에 관한 것」은 구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당해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명기하게 된 것이다.

⑥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제19호까지의 장관관방 국제부의 사무로 된다(법 제21조 제2항).

장관관방 국제부를 설치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모든 경찰업무에 있어서 경찰협력

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는 것 이외에, 사회의 국제화에 의하여 외국인에 관한 경찰 행정을 통일적으로 추진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장관관방 국제부를 설치함으로써 국제협력업무, 외국 경찰기관과의 협조 및 재일외국인 문제의 대응 등을 통일적, 효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체제를 정비하

게 된 것이다.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무는 조직령 제4조의 7에 의하여 국제 제1과의 사무로 되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사무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사무를 형사국으로부터 이관한 것으로 개정전은 형사국 국제형사과의 사무(구조직령 제11조 제2호)였으나, 조직령 제4조의 8 제1호에 의하여 국제 제2과의 사무로 되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사무는 국제 제2과의 조직령 제4조의 8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무(형사), 국제형사과의 사무(구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구조직령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된다.

⑦ 또한, 구법 제21조 제5호의 「범죄통계를 제외한 경찰통계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국으로 이관하는 동시에(법 제25조 제4호) 개정전의 장관관방 정보관리과의 사무(구조직령 제4조의 5)는 정보통신국 정보관리과로 이관하였다(조직령 제19조의 2)

⑧ 개정조직령에 의하여 장관관방에 개정령에서 위임한 소관행정에 속하는 중요사항중 기술에 의한 기획, 조사(감찰) 등 관계사무 총괄을 위해 기술심의관 1인 및 수석감찰관 1인을 두는 것(조직령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과 함께 경무국 수석감찰관을 폐지하였다(구조직령 제8조의 2)

나. 생활안전국 관계

①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행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 형사국 보안부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새로이 생활안전국을 설치하여(법 제19조 제1항) 동 국의 소관사무를 규정하였다(법 제22조).

생활안전국을 설치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종합적인 방법대책, 지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경찰 중심활동, 소년비행대책, 총기·약물대책 등 시민생활 신변과 관련된 경찰행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이들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형사국 보안부의 체제를 개편 강화하게 된 것이다.

② 법 제22조 제1호의 「범죄, 사고, 그 이외의 사안에 관계되는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사항」은 기존경찰청 형사국 보안부의 담당업무중,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확보의 관점에서 새로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국에서는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확보를 위하여 개인의 보호에 착안한 경찰활동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 경찰활동(예를 들면, 범죄피해의 방지, 시민생활 침해사범으로부터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③ 법 제22조 제2호의 「지역경찰, 그 이외의 순찰에 관한 것」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순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지역경찰」이라는 것은 시민이 안정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눈 일정지역(소관구)에 대하여, 각각 담당 파출소, 주재소에 근무하는 제복의 경찰관이 지역사회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요망 등에 대응해가는 순찰활동

등의 제반활동을 말하며, 이 「지역경찰」은 「순찰」의 일부인데, 최근의 극심한 범죄정세, 치안정세하에서 시민이 안정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종전보다 늘려 보다 지역에 밀착된 경찰사무(지역경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찰」을 「순찰」로부터 특기(特記)하기로 한 것이다.

④ 법 제22조 제3호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것」은 구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사무에, 법 제22조 제4의 「보안경찰에 관한 것」은 구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 사무에 각각 해당한다.

⑤ 생활안전국에 생활안전기획과, 지역과, 소년과, 생활환경과, 총개대책과, 약물대책과의 6과를 두었다(조직령 제5조).

생활안전기획과는 개정전의 형사국 보안부 방법기획과의 사무를 대부분 관장한다(조직령 제6조, 구조직령 제13조). 즉, 법 제22조 제1호의 「범죄, 사고, 그 이외의 사안에 관계되는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사무일반에 관한 것」을 담당(조직령 제6조 제2호)하게 되는 것이다.

형사국 보안부 방법기획과의 사무중 「명정자(醜酌者), 가출인, 미아, 그 이외의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의 보호에 관한 것」 및 「술에 취해 공중에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03호)」의 시행에 관한 것(구조직령 제13조 제6호 및 제7호)은 지역과의 사무로 되었고(조직령 제7조 제

8호 및 제9호), 「외국인 노동자에 관계되는 고용관계사범의 단속에 관한 것」(구조직령 제13조 제11호)는 생활환경과의 사무로 되었으며(조직령 제8조의 2 제10호), 그 밖에도 기타 필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역과는 개정전의 형사국 보안부 지역과의 사무(구조직령 제13조의 5)를 관장하게 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국 보안부 방법기획과 사무의 일부가 이관되었다(조직령 제7조).

소년과는 개정전의 형사국 보안부 소년과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조직령 제8조, 구조직령 제13조의 2).

생활환경과는 개정전의 형사국 보안부 생활보안과의 사무를 대부분 관장하게 되는데(조직령 제8조의 2, 구조직령 제13조의 3), 「공해관계사범의 단속에 관한 것」(구조직령 제13조의 3 제1호)가 「공해관계사범 그 이외의 환경관계사범의 단속에 관한 것」(조직령 제8조의 2 제1호)로 개정되었고,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법률 제6호)」, 「화학류 단속법(1951년 법률 제149호)」의 시행에 관한 것(구조직령 제13조의 3 제5호 및 제6호)가 총기대책과의 사무로 되고(조직령 제8조의 3 제2호 및 제3호), 형사국 보안부 방법기획과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게 되었다(조직령 제8조의 3 제10호).

총기대책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국 보안부 생활보안과 사무의 일부를 이관받는 것(조직령 제8조의 3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권총, 그 이외의 총기단속에 관한 것」을 관

장하는 것으로 명확히 되었다(동조 제1호).

약물대책과는 개정전의 형사국 보안부 약물 대책과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조직령 제 8조의 4, 구조직령 제13조의 4).

다. 형사국 관계

① 경찰청 형사국 보안부를 폐지함과 동시에 전술한 바와 같이 장관관방 국제부에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것」을 이관하게 되었다(법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8호, 제23조).

② 개정조직령에 의하여 형사기획과의 사무로서 「외국인 범죄정보(형사경찰에 관계되는 범죄중 외국인에 의하여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관한 정보에 한정된다)의 수집, 정리, 그 이외 외국인 범죄정보에 관한 것」(조직령 제10조 제7호)를, 수사 제2과의 사무로서 「정치자금에 관계되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것」(조직령 제10조의 3 제2호)를 각각 추가하고, 국제형사과를 폐지하게 되었다(조직령 제9조 제1항).

라. 경비국 관계

개정전의 경비국 외사 제1과 및 외사 제2과를 통합하여 외사과를 설치하게 되었다(조직령 제17조).

마. 정보통신국 관계

①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통일적인 운용에 의한 경찰활동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통신국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정보통신국을 새로 설치함과(법 제19조 제1항) 함께 동 국의 소관사무를 정하게 되었다

(법 제25조).

② 법 제25조 통신국의 사무에 법 제25조 제2호의 「소관행정에 관한 정보의 관리에 대한 기획 및 기술적 연구계산조직의 운용에 관한 것」, 동조 제3호의 「소관행정의 사무능률 증진에 관한 것」은 구법 제21조 제11호의 「앞의 각 호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국(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 하는 등 개정전의 장관관방 정보관리과의 사무에 해당한다(구조직령 제4조의 5 제1호, 제2호). 한편, 법 제25조 제4호의 사무는 장관관방으로 이관되었다.

③ 정보통신국에 정보통신기획과, 정보관리과, 통신운용과, 통신시설과의 4과를 두었다(조직령 제18조).

정보통신기획과는 개정전의 통신국 통신총무과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조직령 제19조, 구조직령 제19조)인데, 국의 서무담당과로서 필요한 사무를 조직령 제19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였다.

정보관리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전의 장관관방 정보관리과의 사무를 관장한다(조직령 제19조의 2).

통신운용과는 개정전의 통신국 통신운용과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조직령 제20조, 구조직령 제20조) 외에 새로이 「기동경찰통신대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기구로 규정되었다(조직령 제20조 2호).

통신시설과는 개정전의 통신국 유선통신과 및 무선통신과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조직령 제21조).

2. 생활안전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파출소 교번(交番)에의 개칭

① 구법 제53조 제5항의 경찰서의 하부기구로서 둘 수 있는 파출소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파출소」를 「교번, 그 이외의 파출소」로 개정하게 되었다(법 제53조 제5항).

② 都道付縣 지역경찰의 활동기반으로 되어 있는 파출소(=생활안전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파출소)에 지역주민에 친숙하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교번」의 명칭을 부여하기로 하여 「교번」을 「파출소」로부터 특기(特記)하였다.

③ 교번 이외의 파출소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변화가, 공항, 그 이외 특수한 경찰대상 지역중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되는 경비파출소(지역경찰운영규칙《1970년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5호》 제27조) 및 간선도로에 있어서의 都道付縣 경계 지역 등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검문소(지역경찰 운영규칙 제28조)가 있다.

3. 都道付縣 경찰 상호간의 관계 등

경찰법에서는 “都道付縣 경찰은 당해 都道付縣 구역에 대하여 경찰의 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제36조 제2항), 都道付縣 경찰의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제64조) 그 예외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사건이 발생된 都道付縣 경찰로부터 원조의 요구를 받아 그 都道付縣 경찰의 관할구역내에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제60조)

② 인접된 都道付縣 경계지역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접된 다른 都道付縣 경찰의 관할구역에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제60조의 2)

③ 都道付縣 경찰의 관할구역내에서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피의자의 체포, 기타 공안의 유지와 관련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외에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제61조)

범죄의 광역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②항 및 ③항에 대한 규정의 정비와 함께 사안의 공동처리 등에 관련되는 지휘의 일원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할구역이 인접(또는 근접)된 都道付縣 경찰은 관할구역 경계지역에서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관계 都道付縣 경찰의 관할구역내에 권한을 미치는 것이 가능함.

• 都道付縣 경찰은 개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에도 권한을 미칠 수 있음.

• 경시총감 또는 都道付縣 경찰본부장은 당해 都道付縣 경찰이 다른 都道付縣 경찰의 관할구역에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른 都道付縣 경찰과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都道付縣 경찰

일인의 경찰관에게 당해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각각의 都道付縣 경찰의 경찰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휘를 행할 수 있도록 함.

상기 3가지 이외에도 기타 필요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가. 관할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권한관계

① 개정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인접(또는 근접)한 都道付縣 경찰은 상호협력하여 결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서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관계 都道付縣 경찰의 관할구역에 권한을 미칠 수가 있게 되었다(법 제60조의 2)

② 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근래에는 都道付縣 경계지역에서의 시가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복수의 都道付縣에 걸치는 비교적 광대한 지역에 생활경제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동경도 마쓰다시, 가나가와쎄 마야또시 주변 등).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都道付縣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행이 행해져 범인의 추적이 이루어지는 등 복수의 都道付縣의 공안유지에 관련되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천된다(광역긴급배치에 관하여 1988년과 1994년을 비교하면 실시건수는 280건에서 429건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검거율은 52.1%에서 24.7%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都道付縣 경계지역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인접(또는 근접)된 都道付縣 경찰이 공동으로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등의 수사활동을 행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都道付縣 경찰이 인접(또는 근접)된 都道付縣

경찰에게 기동수사대의 현외(縣外) 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바, 인접(또는 근접)된 都道付縣 경찰의 수사관이 현외(縣外)에서 직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의 명확화, 다른 都道付縣 경찰에 속하는 수사관 상호간의 지휘체통의 일원화 등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都道付縣 경찰이 주변의 都道付縣 경찰에 수사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조요구 제도에 의한 문제점으로는 아래와 같다.

- 1) 다른 都道付縣 경찰에게 수사관 파견 요청의 필요성 또는 적당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동화 되는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
- 2) 사안마다 법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법 제60조 제2항 등).
- 3) 파견요청 都道付縣 경찰의 사무로서만 인식되어 관계 都道付縣 경찰이 상호 책임하에 광역초동 수사활동에 공동으로 임해야 할 현실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것.
- 4) 요구를 받아 파견된 경찰관은 자신의 책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경향을 보이고, 많은 노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범죄수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
- 5) 본래의 취지는 해당의 都道付縣 경찰의 능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하기 위한 제도이나, 都道付縣 경계에서의 정상적인 초동수사활동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또 이와 같은 사안에 관한 관할구역외에서의 권한에 관한 구법 제61조 제1항 규정의 적용시에는 개별 사건마다 요건해당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나, 수시로 변하는 경찰업무의 성질상 전체 상황의 파악이 용이치 않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치안 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보다 고도의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한 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都道付縣의 구역을 기준으로 특정의 都道付縣 경찰에게 사무를 분배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都道付縣 경찰이 공동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조직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都道付縣 경계지역에서의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필요성의 판단이나 원조요구의 절차 없이 모든 都道付縣 경찰이 다른 都道付縣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긴밀한 연락 유지와 협력을 통하여 특정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구역 경계지역에서의 사안에 관한 권한을 규정한 구법 제60조 2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1) 「경계부근의 구역」이라는 한정적인 문구에 대한 구법 제7조 2의 규정은 사건

발생지역의 한계를 원칙적으로 2킬로미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화되고 있는 현재의 범죄의 실태와 맞지 않는다(「경계부근 구역」 및 「원칙적으로 2킬로미터」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구법 제60조의 2’가 직접적으로 경계를 접하는 都道付縣 경찰 상호간의 경계지역에서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서, 동일한 시설이 복수의 都道付縣에 걸치는 경우(동경·가나가와깁 都道付縣과 같은 것, 오오사까·하마꼬 부현직경의 이또공항 등)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등이 주로 상정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2)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都道付縣 경찰상호간에만 적용이 있는 것으로 단순히 근접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군마현과 이바라끼깁과의 관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의하여 보다 명확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③ 개정법에 의하여 대응하는 都道付縣 경찰에 대하여 「관할구역이 인접된 都道付縣 경찰」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인접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접」이라는 것은 「옆에 서로 접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근접」이라는 것은 인접과는 달리 「경계가 서로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경계간의 간격이 지극히 짧은 경우」를 말한다.

④ 개정법에 의하여 대응하는 사안에 관계되는 지역에 대하여, 「인접에 관계되는 경계 부근의 구역」을 「사회적 경제적 일체성의 정도, 지리적 상황 등으로부터 판단하여 상호 권한을 미칠 필요가 인정되는 경계주변의 구역」으로 개정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일체성의 정도, 지리적 상황 등」은 법 제60조의 2의 규정의 적용구역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예시하는 것으로, 1) 「사회적 경제적 일체성의 정도」라는 것은 통근·통학권, 상권, 기타 일상 생활권의 지역적 넓이 등의 관점에서 현 경계가 사람 교류 등 都道付縣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2) 「지리적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호수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수면의 일부가 아닌 전역에 걸친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 구역을 관할하는 都道付縣 경찰이 상호 권한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 경우와 동계(冬季)의 적설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都道付縣 경찰에 의한 대응이 불가능한 산간지역의 인접된 都道付縣 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3) 「등(等)」에는 교통사정, 범죄의 발생상황 등이 포함된다.

또, 괄호안의 「경계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리까지의 구역에 한한다」는 개정부분은 아니나, 「사회적 경제적 일체성의 정도, 지리적 상황 등으로부터 판단하여 상호권한을 미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계주변의 구역」을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 개정의 취

지에 비추어 보아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즉, 개정령 제7조의 2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15킬로미터로 되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복수의 都道付縣 경찰이 공동으로 초동수사 활동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구역에서의 적당한 거리로서 정해진 것이다. 단,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를 걸치는 터널 및 고속도로에서 그 출입구(고속도로의 경우는 출구)가 경계로부터 1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한계로 하였다. 또한, 구령 제7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15킬로미터로 하였기 때문에 특례를 설정할 필요성이 없어져 모두 삭제하였다.

나. 관할구역외에 있어서의 권한관계

① 都道付縣 경찰은 거주자, 체류자, 기타 그 관할구역 관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관할구역외에도 권한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1조).

② 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에 의하여 예상되는 구체적인 경찰활동은 경호 혹은 폭력단 등에 의한 공격 대상으로 되는 자에 대한 보호이다.

경호의 예를 들면, 내각총리대신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이 일상경호를 행하고 있는데, 동경도의 관할구역외에 있어서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선지 縣의 경찰로부터 원

조 요청을 받은 경찰청이 일상 신변경호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파견하고 있다.

이것은 경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호원이 경호대상자 행동의 성향 등에 대하여 숙지함과 동시에 경호대상자와 경호원 사이에 충분한 신뢰관계의 조성과 더불어 경호대상자로부터 都道付縣의 경계에 상관없이 동일한 경호원에게 경호를 받고싶다는 취지의 의뢰도 있을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현행법상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요구에 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1) 당해 경호의 실시는 현지 경찰의 사무로 되어 경호원이 소속되는 都道付縣 경찰의 책임이 절단되기 때문에 파견 경호원 및 그 소속 都道付縣 경찰의 적극적인 경호 책임의식 결여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원조를 하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필요한 의견보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한편, 파견을 받는 都道付縣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파견 경호원에 대하여 당해 都道付縣 경찰 소속직원에게 비해 지휘를 하는데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경호를 실시하게 될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
- 2) 파견된 경호원은 현지 경찰본부장의 지휘하에 활동하게 되고 경호대상자의 이동에 따라 지휘계통이 자주 바뀌게 되기 때문에, 경호가 복수의 都道付縣에 걸쳐

는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정을 행하고 있는 바, 각각의 경찰본부장에 따라 미묘한 대응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 3) 원조의 요구는 본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중단이 허락되지 않는 경호의 성격상 이러한 점이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복수의 都道付縣 구역에 걸치는 경우 횡수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결함이 현저히 증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폭력단이 폭력추방과 관련되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른바, 개인 테러형의 공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폭력단의 공격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신변보호활동은 성격상 경호와 유사하여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가지는 경찰관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1) 경호요인(要人)과 달리 대상자의 행동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지의 都道付縣 경찰은 충분한 준비시간을 취할 수 없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
- 2) 이동지의 都道付縣 경찰은 사전 준비와 인식이 없는 한 계속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원조요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 3) 일반개인을 포함하는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서 일체할 사정에 맞게끔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동일의 경찰관이 都道付縣의 경계에 구애됨 없이 계속하여 경호 또는 신변보호를 할 수 있게 된다.
- 2) 경찰관은 자신이 소속되는 都道付縣 경찰의 책임과 그 경찰본부장의 지휘하에 경호 또는 신변보호를 행할 수 있게 된다.
- 3) 원조의 요구나 인계를 위한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경호 또는 신변보호 중단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체류자, 기타 그 관할구역의 관계자」에 대해서, 「거주자」라는 것은 당해 都道付縣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자(현실적으로 당해 都道付縣의 구역내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를 말하며, 「체류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해 都道付縣의 구역에 존재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의 그 관할구역의 관계자」라는 것은 특정 都道付縣 경찰의 경찰관이 都道付縣의 구역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경호 또는 신변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상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 동경도외에 자택이 있는 대신(大臣)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경호원이 동경도에서 자택까지 경호를 행하는 경우

2) 신동경국제공항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의 주요 인물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경호원이 당해 주요인물이 신동경국제공항으로부터 도현의 경계까지 경호를 행하는 경우

3) 경찰청 송치사건의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동경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동사건의 공판계속중 경찰청의 경찰관이 동경도외에서 신변보호에 임하는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경호 대상자는 모두 동경도의 「관계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경호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소속된 都道付縣 경찰의 관할구역에 머지않아 편입 예정이거나 당해 관할구역에 관계되는 업무 관계자 등 당해 都道付縣 경찰의 관할구역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자이다.

④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경찰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미치거나 또는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 제61조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활동은 취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호를 비롯한 개인신변의 경찰활동을 들 수 있다.

⑤ 또한, 개정법에 의하여 구법 제61조 제2항은 삭제되고, 동항의 긴밀한 연락유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 제61조의 2 제3항에 일반화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일본 폭력조직의 실태와 대책

경감 정 승 호
(경찰대학 교관)

〈目 次〉

I. 개설

II. 폭력단의 의의와 배경

1. 폭력단의 의의
2. 초기의 폭력조직
3. 2차세계대전 이후의 폭력조직
4. 최근의 폭력조직
5. 폭력단 대책법 성립 후의 폭력단 동향

III. 폭력조직의 실태

1. 폭력단의 조직원리
2. 폭력단원의 실태

3. 지정 폭력단의 실태

4. 폭력단 활동의 국제화

IV. 일본경찰의 대책과 추이

1. 폭력단 대책법 시행
2. 폭력단 종합대책 추진
3. 폭력단 대책법 및 폭력단 종합대책 추진 성과
4. 앞으로의 과제

V. 결어

I. 개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는 그것이 좋은 나쁜던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발전 양상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와 역

사적 문화적 배경상 공통점이 많은 나라이며 우리나라 보다는 사회발전 정도가 선진국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찰의 측면에서 보아도 현재의 우리나라 경찰의 직제와 활동 등 상당부분이 일본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